

# 범죄 피해자·유가족분들께

## 고치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사업비 보조금 제도 안내

중대한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하신 피해자의 유가족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 피해 후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### 《보조금 제도 개요》

항목	생활자금 지원	이사비용 보조	재제소 비용 보조
보조 한도액	사망 30만 엔 (상한) 중상병·성범죄 10만 엔	20만 엔(상한)	32만 엔(상한)
보조내용	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유족, 성범죄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로 인한 심신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합니다.	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기존 주거지에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.	범죄 피해와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갱신하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.
대상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례식 비용 등</li> <li>경찰, 법원 등으로의 교통비, 숙박비 등</li> <li>가사, 육아 보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li>취업·이직 지원 서비스 요금</li> <li>주택 수리비, 전입 후 증가분 임대료</li> <li>의료비·통원비 등(※성범죄 피해에 한함)</li> <li>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(※범죄 피해 급부제도, 공비부담제도 등 다른 공적 지원 대상 비용은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송비</li> <li>포장 등의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(운송사업자가 행한 것에 한함)</li> <li>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이사를 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(※새로운 주거지의 임대료, 계약시 보증금 및 사례금,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제소 제기 시 법원에 지불하는 사무 수수료 (인지대, 예납우편료 등) (※ 변호사 비용 제외)</li> </ul>
신청 기한	범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을 넘지 않아야 함.	범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을 넘지 않아야 함.	재제소한 날로부터 2년을 넘지 않아야 함.
대상 범죄 피해자	①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. ②범죄 피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피해자 중 1개월 이상 치료 및 통산 3일 이상 입원(정 신적인 질병은 3일 이상 노무 불가)이 필요하다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. ③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		

(※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 피해(재제소는 같은 날 이후에 제기한 경우)를 대상으로 합니다.)

(※ 신청 시에는 피해 상황 등을 묻기 위해 **면접 상담이 필요**합니다.)

◆제도의 이용에는 이 밖에도 조건이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**현 홈 페이지**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# 《보조금 신청과 면접 상담에 관한 상담 창구》

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

고치 피해자 지원센터

전화: 088-854-7867

접수: 월요일~금요일(공휴일·연말연시 제외)

10시~16시

#### 《보조금 제도에 관한 문의》

현청 문화생활 스포츠부 현민생활과

전화: 088-823-9340

접수: 월요일~금요일 (공휴일·연말연시 제외)

9시~12시, 13시~16시

고치현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홈페이지 ⇒

